

현행	개정안
제4조(조사의 방법 등) ① (생략)	제4조(조사의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<u>사전에</u> 알려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</u> 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과징금의 산정방법)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”이란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<u>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을 연평균 거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</u>	제6조(과징금의 산정방법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사개시 결정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36개월 동안</u> ----- --- <u>금액의 합계를</u> ----- <u><단서 삭제></u>

의 거래 금액을 연평균 거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,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마지막 위반행위일까지의 거래금액을 말한다.

1. 2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제8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④ (생략)

제9조(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과징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-----
-----.

-----.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) ① -----

----- 3천만원 -----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거래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

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(단계)	단계별 부과기준
10억원 이하(1단계)	(현행) 부과기준 거래액의 30/100 (개정안) 부과기준 거래액의 10/100
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(2단계)	매 10억원마다 500만원
1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(3단계)	매 100억원마다 1,000만원
1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(4단계)	매 1,000억원마다 2,000만원
1조원 초과(5단계)	매 1조원마다 4,000만원